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9년 9월 16일

나. 발 의 자 : 홍난이, 김재우, 송용자, 이선우, 이지연 의원(5명)

다. 회부일자 : 2019년 9월 16일

라. 상정일자 : 2019년 9월 24일

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2019년 11월 26일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홍 난 이 의원

나. 제안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대표자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등을 정함(안 제1조~제3조)
-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제11조)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제18조)
-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을 위한 규정(안 제19조~제25조)
-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 사항을 규정(안 제26조~제27조)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타사항(안 제28조~제41조)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기 타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박 경 자

- 본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동강령 표준안이 통보되어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의정활동의 청렴성 제고와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구미시의회의 실정에 맞게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